

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 저널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중기업
경영관리
의주화

2021/ 8/ 18 통권 1532호

CEO·CFO·COO · 회계책임자 · 조세전문가 · 재정실무자 · 총무담당자 · 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戰略

CEO 에세이 - 이해의원장

햇돌형CEO의 규범과 전략 '5정1조'

8월은 일용근로자·인적용역 사업자에 대한 소득자료 매월 제출 첫 달

경영관리임직원 재경컨설팅 제안

- 박윤중 회계사 : 부동산 임대소득의 감가상각비(실제반영, 의제반영) 해당액은 양도시 취득원가에서 제외함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코로나19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지원 강화
- 8월은 일용근로자·인적용역 사업자에 대한 소득자료 매월 제출 첫 달!
-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시기 조정 등을 위한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 2022년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으로 고시
-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고용창출 목적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을 연구개발비로 사용한 경우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 안됨 (p.13)

<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의 과세방법과 세금혜택 >

개념구분	정의, 범위, 과세방법, 회계처리, 세금혜택
개념정의	기업 임직원이 회사 주식을 시세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행사이익	(주식매수권 행사 시가(=행사의사 표시일 종가) - 실제 취득구입가액) × 행사주식숫자(벤처기업법: 주식수의 50% 내, 상법 등: 발행주식수 15% 내)
소득구분	근로소득(재직 중 행사) 또는 기타소득(퇴직 후 행사, 법정필요경비는 없고 전액과세)로 구분
비과세	행사일(행사청구일) 귀속 매년도 단위로 행사이익 매년 3천만원까지는 비과세 (벤처기업, 코넥스기업만 가능), 매년 3천만원 초과액은 과세
소득공제	벤처기업 임직원의 투자액 소득공제(3천만원까지 100% 공제, 3천~5천까지 70%, 5천만원 초과분은 30%),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의 소득공제도 2500만원 한도 적용됨
과세이연	벤처기업임직원의 3년간 행사(적격주식매수권) 금액 5억원 이하까지는 과세이연 한 후, 해당 주식의 실제 양도시점에 주식양도소득으로 과세함(세율은 10%, 20% 또는 대주주 단기보유분은 30%)
손금산입	스톡옵션행사는 노무출자의 일종으로 노무출자사원의 급여 등은 손금불산입이 원칙(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이지만, 예외로 특별히 손금산입을 규정함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와 제19조의2)

(안세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제공)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주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532 호 / 주간 33호

2021. 8. 18. (수)

· 발행인 : 이윤선
 · 제작 : (주) 안건조세정보
 · 대표전화 : (02) 829-7575
 FAX : (02) 718-8565

목 차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02) 829-7575
 팩스:02) 718-8565
- 부산·경남
 전화:051) 642-3988
 팩스:051) 642-3989
- 대구·경북
 전화:053) 654-9761
 팩스:053) 627-1630
- 대전·충청
 전화:010) 3409-2427
 팩스:042) 526-1686
- 수원·안산
 전화:010) 5255-6116

-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198993-13-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 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상담(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지원
- ⑩ 세무·회계·재경교론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의 과세방법과 세금혜택	표지
긴급 시사해설	90세 부모님이 살던 1세대 1주택을 최종 정리하는 방법들과 세금비교	2
CEO에세이	햇불형CEO의 규범과 전략 '5정1조'	4
세무·회계상담자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단가 협상중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 공장건물 내 보관창고 신속 시 과세대상 여부 - 선금금 세금계산서와 어음할인 가능 여부에 관한 문의 - 보험 미수선 처리	6 7
눈에 맞는 절세미인	해외여행에 따른 여비·교통비의 손금인정 범위	8
매일 절세재무요점	- 추진중인 양도소득세 개편안 - 해외 주요국의 세부담률 판정기준	10 11
직장인 Survival	호감가는 첫인상을 만드는 방법	12
최신판례예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국가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이 아닌 목적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연구·인력개발비는 세액공제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법령법인-3626, 2021.01.07) - 채고자산 감소손실의 원인이 거래상대방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 확인된 경우 손해배상채권으로 계산한 후 해당 손해배상채권은 참고업체의 사업폐지 등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손비로 계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사전법령법인-1090, 2021.01.15)	13 14
세정뉴스와 해설	일용근로자 인적용역 사업자, 31일까지 7월 소득자료 제출	15
마케팅 Tax consulting	고용창출 목적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을 연구개발비로 사용한 경우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안됨	13
세무정보	- 코로나19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지원 강화 - 8월은 일용근로자·인적용역 사업자에 대한 소득자료 매월 제출 첫 달!	16 27
회계정보	-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시기 조정 등을 위한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38
노무정보	- 고용노동부, 2022년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으로 고시 -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2 44
세무환율정보	부가세 영세를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43

90세 부모님이 살던 1세대 1주택을 최종 정리하는 방법들과 세금비교



박윤중 공인회계사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 (전)한국외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전)국민대 경영대 겸임교수
- 공인회계사 · 경영학박사(마케팅조세전략, 회계경영학원론)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서울대 경영대학원 졸업
- 다수우량기업 회계 · 세무고문(SK증권, 지오다노, 동서그룹 등)

가업승계·증여·상속자문
기업경영권 양도 컨설팅
(829-7575)

- 상황 : 실거래가 15억 아파트(1세대 1주택), 당초 취득원가는 5억원, 보유 · 거주기간 10년 이상(희망 : 동거효도봉양 1인에 귀속)

소유권 이전방법	쟁점요소, 세금계산방법		장단점
① 사후상속 (취득세율 2.8%)	기초공제 5억, 배우자공제 5억 적용 후, 과세금액 5억 원의 상속세는 1억×10% + 4억×20% = 9천만원		상속인 다수의 공동등기와 유류분으로, 합의 어려움
② 생전 직접 시 세 증여 (취득세율 3.5%)	효도봉양 가족에게 단독 증여	1인 단독증여, 15억 - 5천 = 14.5억의 증여세 ⇒ 1억 × 10% + 4억×20% + 5 억 × 30% + 4.5억 × 40% = 4.2억	자녀 1인 증여 (소유권 단일)
		4인(자녀부부+손자2)에 분산증여 ① 5.5억 - 5천 = 5억 : 1억×10% + 4 억×20% = 9천만원 ② 5억에 대해 9천만원 ③ 손자 2인(30% 할증) 2.25 - 0.25 = 2억 : 1억×10% + 1억×20% = 3천 ×1.3배 = 3천9백만원 4인수증세금 합 : 9천만원×자녀 2인 + 3.9천만원×손자 2인 = 1.8억 + 0.78억 = 2.58억	자녀, 며느리 손자 2명 등 4명의 분산소 유 (각자 1주택이 되는 불이익 있음)

<p>③ 가족간 저가양도 후 증여 (30%와 3억원 증적은금액 감액양도해도 증여 아님 (상증법 제35조)) (취득세율 3% 또는 8%)</p>	<p>양도가(12억) 1세대 1주택</p>	<p>양도 9억까지 비과세, 초과 3억 - 원가 5억×3/12 - 장기보유공제 차익의 80% 인 1.4억 = 35백만원 ⇒ 양도세 1200만원×6% + 2300만원 ×15% = 417×1.1배 = <u>4,587,000</u></p>	<p>취득자 명의를 가족 1인 또는 다수 선택가능</p>
	<p>양도대금 12억원 받고 다시 현금 증여</p>	<p>1인 단독 증여 : 12억 - 5천 = 11.5억 ⇒ 1억×10% + 4억×20% + 5억×30% + 1.5억×40% = <u>3억원</u></p> <p>4인 분산증여 ① 5.5억 ⇒ 9천만원 ② 4.5억 : 8천만원 ③ 1억×10%×1.3배×2인 = 34백만원 합 : <u>2.04억원</u></p>	<p>부모 양도대금 의 현금증여이 므로 각자 주 택 소유문제 없음</p>
<p>④ 주택의 타인양도 (타인이므로 취득 세율 부담 없음)</p>	<p>총 양도가 15억</p>	<p>① 9억원 비과세 ② 6억원 - 5억×6/15 - 3.2억(80% 공 제) = 소득 8천만원 ⇒ 14백만원×1.1 = <u>1540만원</u></p> <p>단독증여세 4.2억, 4인 분산증여세 2.58 억 등 ②와 같음</p>	<p>부모 집은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됨</p>

횃불형CEO의 규범과 전략 '5정1조'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약400년전 율곡 이이는 지도자를 세가지로 나누어 논한 바 있다.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목표 달성을 이루어내는 의지의 창업형. 창업자의 뜻을 받들면서 번영을 꾀하는 테크노크라트(Technocrat)적인 수성형. 급변하는 환경을 극복해내야 하는 개혁적인 갱생형이 그것이다.

오늘의 CEO를 율곡의 말씀에 따라 음미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국민 건강을 위해 유한양행을 창업, 기업가의 모범으로 존경받는 유일한 박사가 창업형에 속한다.

창업자의 뒤를 이어 기업을 경영하는 대부분의 2세대 3세대 경영자들이 수성형에 속한다. 어찌보면 수성은 창업보다 더욱 험난하다고 할 수 있다. 창업의 장점을 발전시키면서 또 묵은 때를 견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환경자체가 창업 때와는 다르다. 그래서 수성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 혁신이 요구된다. 결국 성공적인 수성형은 갱생형과 맥락을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무튼 오늘날 전문경영자 CEO의 성공조건은 훌륭한 지도력에 있다. 그것은 냉철한 판단력과 탁월한 추진력 그리고 높은 도덕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한 횃불형 CEO가 되려면 '5정1조'라는 근본적인 '실천적 행동규범과 전략'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

'5정'이란 정결, 정확, 정열, 정통, 정성)을, '1조'란 조화를 일컫는다.

첫째, 정결. 우선 CEO가 바르고 깨끗해야 한다. 이는 기업의 투명성과 직결한다. 시스템 이전의 선결과제다. 바로 오늘날 한국 기업의 생존 조건이며 한국의 발전 조건이다. 결코 외국의 요구에 의해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이 썩을수록, 지식사회가 될수록 정결은 빛나는 행동 규범이자 훌륭한 전략이다.

푼돈 약100억원의 세금을 내고 결국 몇 조원의 자산을 30대 초반 유학생 아들에게 증여하고 세습을 꾀하면서 합법적이라고 우기는 한국의 대표적 재벌 오너가 엄존하는 세상이다.

봉급인 배보다 배꼽이 큰 엄청난 업무 추진비, 판공비, 기밀비, 접대비 등의 해피마추한

명칭의 돈을 즐기는(?) 국민의 공기업 CEO가 수두룩하다. 회계의 분식은 으레 상식이 되다시피 했다. CEO의 정결! 이것이야말로 미래를 열어 가는 가장 중요한 열쇠다. 도덕성의 회복, 깨끗한 경영(Moral-Based Management)이 첫번째 CEO의 규범이 되지 않으면 한국기업의 미래는 없다고 단언해도 좋다. 투명경영, 민주경영, 열린 경영의 초석이기도 하다.

둘째, 정확. 정확한 납기. 순간순간을 생명처럼 여기는 정확한 시간경영(Time-Based Management)과 정확한 약속 지킴. 칼날 같은 정확한 정보 파악과 판단. '카더라 방송'과 '뒷속말'에 흔들리지 않는 엄연함. 공정한 상벌과 인사. 그리고 스스로 책임질 줄 아는 정확성이 CEO의 지도력을 빛내준다.

셋째, 정열. CEO는 행동하는 지도자이며 실천가다. 일부 관료들처럼 눈알이나 굴리며 눈치나 보는 나태는 최악일 뿐이다. 끊임없는 정열의 소유자가 아니면 안 된다. 심신이 건강한 근면과 열성. 그것이야말로 꿈을 현실화하고 국내시장은 물론 국제시장에서 공간경영(Space-Based Management)을 가능케 한다. 또 설사 미흡한 판단이 있더라도 재빨리 극복해 낼 수 있는 힘과 창조와 비전의 원천이다.

넷째, 정통. CEO는 자기일, 자기분야, 자기업체에 정통하고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전문성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최소한 전문성을 존중하고 경청할 정도의 겸손한 정보경영(Information-Based Management)능력이 있어야 한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무식하면서 용감한 자'라는 말이 있다. 정치꾼, 관료, 퇴직은행가 출신 등 낙하산 인사로 점철된 공기업의 부실도 기업경영전문성 부족에서 기인한다.

무작정 남의 돈 갖고 경쟁적으로 문어발 확장 경영을 일삼던 재벌들과 또 전문성이라고는 티끌만큼도 없이 새파랗게 젊은 재벌 2세 3세가 기업을 부실 덩어리로 만들고 금융권을 좌초시켰다. 결국 국민의 피땀인 천문학적 공적자금을 빨아대는 흡혈귀가 되고 있다.

다섯째, 정성. 지극한 정성에는 하늘도 감동한다는 전래의 지혜로운 말씀이 전해오고 있다. 나사못하나 한번 더 조이는 정성을 기울이는 가슴경영(Heart-Based Management)과 사람을 극진히 대하는 인간경영(Human-Based Management)이 긴요하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한국인들은 건방져졌다. 식민지 해방과 6.25 동란의 격동을 겪으면서 그나마 고조됐던 애뜻한 정성이 많이 퇴색해졌다. IMF로 호된 시련을 겪고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 안타깝다. 기술도 변변찮고 빚더미인 주제에 정성마저 고갈되어 노사관계조차 걸도는 현실이다. 정성을 다하는 CEO의 솔선수범이 어느 때보다 아쉽다.

마지막으로 조화. 일의 경중, 완급 그리고 성장과 안정을 가리는 균형감과 갈등의 조정능력. 그것이야말로 CEO의 결정적 기초체력이다. 위대한 심포니의 지휘자는 조화경영(Harmony-Based Management)을 꾀하여 아름다운 화음을 끌어내는 치어리더이다. CEO는 기업의 모든 자원과 전략을 최상으로 엮어내는 심포니의 지휘자와 같다. 그런 점에서 예술가의 경지에 오른 햇불형 CEO는 아름답다.

단가 협상중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Q 당사(공급자)와 구매자간 판매단가 책정에 이견이 있어 공급가액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일 경우, 공급이 완료된 월의 세금계산서를 우선 당사(공급자)가 책정한 공급가액으로 발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기와 같은 상황일경우 공급이 완료된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므로 우선 공급자가 책정한 세금계산서기준으로 공급자와 구매자는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 신고를 한 후 추후 공급가액 재 확정 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추가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요?

A 공급가액이 다툼이 있는 경우라도 공급시기에 우선 세금계산서 발급후 추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의견대로 우선 귀사가 책정된 금액으로 발급후 이후에 공급가액이 확정되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여야 하며, 공급가액 다툼이 있다하여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발급자체를 안하고 추후 발급하면 미발급이나 지연발급 가산세, 매입세액불공제 등의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공장건물 내 보관창고 신축 시 과세대상 여부

Q 당사는 공장 내에 물품(용접봉)보관을 목적으로 아연각파이프 골조의 창고(L 6m x W 3m x H 4m)를 신설했습니다.

아연각파이프 골조에 판넬로 둘러싸고 문과 창문이 있는 구조로 공장내부의 보관창고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Q1. 공장 내부에 추가로 설치한 창고의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Q1-1. 또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하면 이에 대해 등기를 해야하는건가요?

Q2. 해당 보관창고를 회계처리상 유형자산의 취득 중 건물로 봐도 되는건가요?

A

1. 지방세법상 토지에 정착하는 레저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저장시설 등도 취득세 과세대상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의 저장시설에는 저장창고도 포함하는데 귀사의 창고가 저장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관할 지자체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무조건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또한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3.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자산으로 회계반영하여야 하는데, 건물보다 구축물로 반영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선금금 세금계산서와 어음할인 가능 여부에 관한 문의

Q 거래업체가 세금계산서 수정을 합의 없이 진행하여, 현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처리해야할지 고민하다 아래와 같이 문의를 남깁니다.(저희는 매입업체 입장입니다)

질의) 제작 납품 계약을 진행하며 선금금 30%를 전자어음으로 지급받았습니다.

해당 어음을 할인하기 위해 은행에 문의하니 선금금 적요 때문에 어음할인이 법적으로 불가하다고 합니다. 세금계산서 적요상 선금금 부분을 삭제하고 재발행할 것을 권하더군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적요를 수정하여 다시 발급합니다.

- 1) '선금금으로 받은 어음은 법적으로 할인이 불가하다'는 은행의 판단이 합법적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 2) 업체가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정발행하였는데, 매입업체 입장에서는 마땅히 대응할 방법이 없을까요

A

1. 선금금으로 받은 어음의 법적할인 관련 내용은 세무회계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금융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2. 세금계산서의 수정발행은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공급자가 발급하는 것이므로, 이미 발급된 수정세금계산서 대해 매입자(공급받은 자)는 공급자에게 재수정 요구 등의 이외에 별도의 세법상 조치를 취할 방법은 없습니다.

보험 미수선 처리

Q 손님차량을 발렛파킹을 하다가 차량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손님이 미수선 지급을 받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자기부담금 금액을 회사에서 손님에게 지급하여 비용처리를 하려고 할때 어떠한 증빙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A 회사의 귀책사유로 손해보상이나 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시고, 인적사항정보를 기재한 송금명세서 작성보관하면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해외여행에 따른 여비·교통비의 손금인정 범위

상담실 백종훈 차장

법인세법상 손금이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의미하는데, 법인의 사업(업무)과 관련이 있고, 일반적이고 합리적으로 용인되는 금액의 한도내이며,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지출 또는 비용)라는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손금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법인이 지급하는 임원이나 직원의 해외여행 관련 여비도 무조건적으로 손금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해외여행이 업무와 연관성이 있으면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비용을 계산하고 있는 등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내의 금액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만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업무관련성의 판정

임직원의 해외여행에 따른 경비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업무와 관련이 있는 여행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인지의 판단은 그 여행의 목적, 여행지, 여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판정하게 된다.

하지만 관광여행의 허가를 얻어 행하는 여행이나 여행알선업자 등이 행하는 단체여행에 응모하여 행하는 여행, 동업자단체·기타 이에 준하는 단체가 주최하여 행하는 단체여행으로서 주로 관광목적이라고 인정되는 여행은 원칙적으로 업무수행상 필요한 여행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실제로 업무와 관련된 해외여행이라도 여행사 등의 패키지 상품을 이용해 다녀온다면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서이46012-10582, 2001. 11. 20

법인이 임직원의 해외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알선업자 등이 제공하는 정형화된 상품(패키지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의 수취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법인46012-2268, 2000. 11. 16 및 부가46015-1296, 2000. 6. 2)을 참고하기 바람. 다만, 여행알선업자 등이 제공하는 정형화된 상품(패키지상품)을 이용한 여행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물론 해외여행을 여행사의 패키지 상품을 이용해 다녀왔더라도, 그 여행기간 중의 여행지, 수행업무 등으로 보아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손금산입이 가능하지만 이때에도 왕복 교통비는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지배주주에게 지급한 여비 및 업무성과 관련 포상여행은 손금불산입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이 아닌 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한 해외출장비나 해외연수비 등의 해외여비는 업무와 관련 있는 비용이라 하더라도, 이들이 회사의 경영과 의사결정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손금불산입이 원칙이다.

또한 업무성과가 우수한 직원이나 부서에게 포상차원에서 해외여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업무와 관련된 여행에 해당되지 않아 관련비용을 법인의 비용이 아닌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한다.

즉, 특정 해외여행이 업무와 관련 있는지의 여부는 여행을 떠나기 전의 해외여행과 관련된 업무관련성이 아닌 실제 여행지에서의 업무가 수행되었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판단근거가 되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우수자에게 포상한 해외여행경비의 경우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여행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❶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이 아닌 지배주주 등(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지급한 여비 또는 교육훈련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서이-45, 2005. 01. 06

업무실적 우수 근로자에 대한 포상 성격의 해외여행경비 지원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19-190022(해외여비의 손금산입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며, 당해 근로자에 대한 급여로 보는 것임.

해외여행에 따른 지출증빙의 수취

해외여행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지출증빙의 경우 항공료는 항공권이면 되고, 숙박요금이나 식대 등은 해외에서 제공받은 용역이므로 지출증빙특례규정이 적용되므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수취의무가 없지만, 현지에서 받은 영수증 등을 수취하면 된다.

하지만 여행사 등을 통해 해외여행을 진행하는 경우 여행사에서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금액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총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수취하여야 하며, 여행사가 교통비·숙박비 등의 소요비용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며 나머지 비용은 직접 영수증 등을 수취하여야 한다.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월

추진중인 양도소득세 개편안

1주택자비과세 기준 상향	9억 → 12억원(법 개정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차등 적용	보유기간 공제율(5%)을 양도 차익에 따라 차등적용 (법 개정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															
거주기간 공제율(40%)	<table border="0"> <tr> <td>양도차익</td> <td></td> <td>보유기간공제율</td> </tr> <tr> <td>5억원 이하</td> <td>→</td> <td>40%</td> </tr> <tr> <td>5억~10억원</td> <td>→</td> <td>30%</td> </tr> <tr> <td>10억~15억원</td> <td>→</td> <td>20%</td> </tr> <tr> <td>15억원 초과</td> <td>→</td> <td>10%</td> </tr> </table>	양도차익		보유기간공제율	5억원 이하	→	40%	5억~10억원	→	30%	10억~15억원	→	20%	15억원 초과	→	10%
양도차익		보유기간공제율														
5억원 이하	→	40%														
5억~10억원	→	30%														
10억~15억원	→	20%														
15억원 초과	→	1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일 산정방식 변경	다주택자가 1주택자 된 경우 남은 주택 취득일에서부터 보유·거주기간 계산(현행) → 다주택 처분 시점에서부터 보유·거주기간 계산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															

화

유턴기업 소득·법인세·관세 감면 요건완화 및 연장

	현행	개정
요건	해외사업장 양도·폐쇄·축소 후 1년내 국내사업장 신·증설 완료	2년 내(+1년) 완료
적용기한	일몰(~'21. 12. 31)	3년 연장(~'24. 12. 31)



해외 주요국의 세부담률 판정기준

국가	한국	독일	일본	미국	스페인	영국
세부담률	15% 실효세율	25% 실효세율	20% 실효세율	법인세 최고세율의 90%	법인세 최고세율의 90%	자국납부 세액의 75%
법인세 최고세율 (지방세 포함)	27.5%	29.9%	29.7%	25.8%	25.0%	19.0%



상생결제 세액공제 지원 확대

	현행	개정
공제요건	① 어음결제금액 미증가 ② 현금성결제비율 미감소	① 어음결제비율 미증가 ② 삭제
공제율	• 15일 이내 지급 : 0.2% • 16~60일 지급 : 0.1%	• 15일 이내 지급 : 0.5%(+0.3%p) • 16~30일 지급 : 0.3%(+0.2%p) • 31~60일 지급 : 0.15%(+0.05%p)
공제대상금액	상생결제금액	상생결제금액에서 현금성결제 감소분 차감



호감가는 첫인상을 만드는 방법

1. 테크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2. 성형수술도 첫인상을 고칠 수 없다.
3. 늦은 시간만큼 첫인상은 구겨진다.
4. 20분 지각으로 인생 1년을 지각한다.
5. 외모에 대한 태도부터 수술하라.
6. 혐오감을 주는 요소를 없애라.
7. 자신감이 밝은 표정을 만든다.
8. 슬럼프에서 탈출해야 표정을 만든다.
9. 용서가 친근하고 넉넉한 표정을 만든다.
10. 쌍꺼풀 수술은 있어도 눈빛 수술은 없다.
11. 옷차림에 대한 태도를 바꿔라.
12. 꼭 고급 옷을 입을 필요는 없다.
13. 상대방의 제스처를 따라하라.
14. 친절한 말투는 권위적인 말투보다 권위가 있다.
15. 듣는 것만으로도 말할 수 있다.
16. 첫마디를 준비하라.
17. 솔직한 나를 드러내라.
18. 설득이 필요한가? 일단 긍정하라.
19. 칭찬은 상대를 유쾌하게도, 불행하게도 한다.

최신 판례 예규

Marketing Tax consulting

고용창출 목적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을 연구개발비로 사용한 경우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안됨

국가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이 아닌 목적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연구·인력개발비는 세액공제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법령법인-3626, 2021.01.07

질 의

- A법인은 통신기기, 위성통신장비 관련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을 받았음
- A법인은 고용창출 등을 목적으로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등 각종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음

질의

- 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이 아닌 고용창출 등을 목적으로 지급받은 각종 지원금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하여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이 아닌 고용창출 등을 목적으로 지급받은 각종 지원금을 사용하여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연구·인력개발비 지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내국법인이 설립 후 자본을 증가하고자 발행하는 신주발행비는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법인-3684, 2020.11.30

질 의

- 법인설립 후 증자시 발생하는 신주발행비를 창업비로 보아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

회 신

내국법인이 설립 후 자본을 증가함에 있어 증자 등기 시 납부하는 등록세, 신주의 발행과 관련하여 공모대행증권사에 지급하는 공모대행 인수수수료,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법률비용, 주권인쇄비, 우송료, 등록비, 사무처리비, 광고료 등)은 「법인세법」 제20조 제2호에 따른 신주발행비로서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보험회사가 보험업에 사용하던 전산시스템의 저작물을 단순 이용허락한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해당 용역이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사전법령부가-1246, 2021.01.22

질 의

- 자문법인은 「보험업법」에 따라 손해보험 및 재보험과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산이용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자로 면세용역(보험업)

- 과 과세용역(부동산임대 등)을 경영하고 있음
- 자문법인은 기존 낙후된 전산시스템을 대체하기 위해 '17년부터 △△과 전산 고도화 시스템 개발작업을 진행하였고, '19년 12월 기간계시스템*(이하 "A전산시스템")을 개발완료하였음
 - 전산시스템에 대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보험업)관련 매입세액으로 판단하여 매입세액 공제받지 않음
 - △△은 "△△△보험 원수사 시스템 구축" 사업 진행 시 사용할 기간계시스템(이하 "B전산시스템")의 개발업체로 참여하여, B전산시스템 개발을 원만하게 수행하고자 '20년 7월 자문법인의 A전산시스템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이하 "본건계약")을 체결하였음
 - 자문법인은 A전산시스템 본건계약에 따라 △△으로부터 수수료를 수령할 예정임
 - 한편, 자문법인은 계약체결에 앞서 「보험업법 제11조의2에 따라 부수업무 신고접수를 금감원으로부터 통보받음

질의요지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보험업에 사용하던 전산시스템의 저작물을 이용허락한 경우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일시적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가 보험업에 사용하던 전산시스템의 저작물 이용을 허락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로서 해당 용역의 공급이 주된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용역이 일시적 또는 우발적 용역의 공급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재고자산 감모손실의 원인이 거래상대방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 확인된 경우 손해배상채권으로 계산한 후 해당 손해배상채권은 창고업체의 사업폐지 등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사전법령법인-1090, 2021.01.15

질의

- (질의①)재고자산을 위탁 받아 보관 및 관리하는 창고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고자산의 부존재가 확정된 경우, 재고자산 감모손실로 계상한 금액의 손금산입 방법
- (질의②)[질의①에서 재고자산 감모손실을 귀책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볼 경우] 해당 재고자산 감모손실의 손금 귀속시기

회신

내국법인이 창고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 재고자산의 장부상 수량과 실제수량 차이의 원인을 알 수 없어 수량차이의 금액을 재고자산 감모손실로 계상하고 손금불산입(유보)하였으나, 그 수량차이가 창고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계약내용에 따라 창고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손금불산입한 금액을 손금산입(△유보)하고 같은 금액을 손해배상채권으로 익금산입(유보)하는 것이며

해당 손해배상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손해배상채권이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창고업체의 정황 등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일용근로자 인적용역 사업자, 31일까지 7월 소득자료 제출

일용근로소득이나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 의무자는 7월분 소득자료를 이달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9일부터 개인, 영리·비영리법인, 국가기관 등 135만명에게 이러한 내용의 소득자료 제출 등을 안내했다고 10일 밝혔다.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따라 소득정보 파악을 위해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월별 제출로 단축됐다.

청소 등 용역 사업자에게 소득을 지급했다면, 국가기관이나 대학 등 비영리법인이라도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 자료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다.

소득자료 제출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홈택스·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쉽고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으며, 세법이 어려운 사업자를 위해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무서를 방문할 경우 현장 신고지원 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는 제출하는 달의 매월 6일부터 말일까지 이용 가능하다.

소규모 사업자는 제도 시행 초기를 감안해 향후 1년간 가산세가 면제되나 2022년 7월 소득지급분부터는 가산세가 부과되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

휴업·폐업을 한 경우라도 휴업일·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과세소득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월급여의 합계액이며, 과세소득에서 근로소득 공제액(15만원)을 빼면 안 된다.

국세청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쉽게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제출방법 따라하기 동영상과 안내문에 신고 시 실수하기 쉬운 사항을 도표로 제공한다.

임대·생애최초 주택 등의 재산·취득세 감면 3년 연장...생애 첫주택은 2년 연장

임대사업자와 항공·운송업자 등에 대한 취득·재산세 감면은 내년부터 3년, 생애최초 취득 주택의 취득세 감면 혜택은 2년간 연장된다. 감염병 전문병원은 추가로 10%포인트 추가로 감면해준다.

경차는 취득세(100%) 감면이 3년 연장과 함께 한도도 확대(50만→65만원)된다. 친환경차인 전기·수소 자동차 취득세(100%) 감면도 3년 연장한다. 친환경 논란이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취득세 감면을 1년 연장하되, 내년에 연장 여부를 다시 논의한다.

10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을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넘어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에 맞게 지방세입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지방세정 운영 효율화 및 납세자 권익 강화 ▲지방세입 과세제도 합리화 등이다.

먼저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임대사업자가 취득·보유하는 임대주택, 생애최초 취득 주택 및 서민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2~3년 연장된다. 임대주택은 면적에 따라 취득세 최대 100%, 재산세 25~100% 감면이 3년 연장된다.

아울러 생애최초 취득 주택의 경우 1억5000만원 이하의 취득세 100%, 1억5000만~3억원(수도권은 4억원)은 취득세 50%가 감면된다. 감면기간은 앞으로 2년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을 개정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서민 생활 안정,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 지방세입 과세제도가 보다 더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지원 강화

- 국세청, 2021. 8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가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11일(수) 입법예고한다.
 - * 5개 법률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재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이번 예고안에는 지난 7월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국세 개정안* 내용이 일부 반영되어있다.
 - * 동반개정 사항 :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기간 확대」, 「가상자산을 통한 재산은닉 방지」 등
-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넘어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에 맞게 지방세입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 개정안 주요내용은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 지방세정 운영 효율화 및 납세자 권익 강화 ▲ 지방세입 과세제도 합리화 등이다.

1]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먼저,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예방·진료 지원을 위해 지방의료원 등 의료기관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3년 연장되고, 감염병 연구·예방, 전문가 양성 등을 위한 감염병 전문병원의 취득세와 재산세는 각각 10%p 추가로 감면된다.
-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국가유공자, 한센인 및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3년 연장되고,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평생교육시설 등 교육시설에 대해서도 지방세 감면이 3년 연장된다.
- 아울러,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위하여 주택임대사업자가 취득·보유하는 임대주택, 생애최초 취득 주택 및 서민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연장된다.

-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항공기, 버스, 택시, 국제선박 등 항공업·운송업 관련 지방세 감면과 위기지역* 내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3년 연장된다.

*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이와 함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전기·수소 및 천연가스 등 친환경 수송·교통수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도 연장될 예정이다.

② 지방세정 운영 효율화 및 납세자 권익 강화

- 레저세 온라인 발매분에 대한 납세지 규정을 신설하고, 국세 환급통보 시 지방소득세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를 개선하며, 체납징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결손처분 제도를 개선한다.
 - 최근 국회에서 「경륜·경정법」 개정으로 경륜·경정 승차투표권에 대한 온라인 발매를 허용('21.8.1.시행)함에 따라 레저세 온라인 발매분에 대한 납세지를 전국 자치단체로 규정하여 레저세가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로 분산 귀속되도록 할 계획이다.
 - 현행 규정상 소득세가 소송 등에 의해 환급되는 경우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납세자 권리구제에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고, 이를 개선코자 국세 환급 통보 시 지방소득세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되도록 개정한다. 또한 소득세뿐만 아니라 법인세의 경우에도 국세 환급결정이 있는 경우 지자체가 환급하도록 명확히 한다.
 - 아울러, 체납세 징수를 잠정 유보하는 내부적인 행정절차임에도 면책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결손처분' 용어를 국세와 동일하게 '정리보류'로 변경하고,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결손처분'은 '결손'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전자송달·자동이체 방식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경정청구 시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합리화한다.
 - 우선 우편발송 비용 절감 효과 등을 고려하여 전자송달·자동이체 세액공제 한도를 기존보다 최대 600원까지 추가로 확대*한다.
 - * 현행 : 150~1,000원(지자체별 조례로 결정) → 개선 : 250~1,600원(지자체별 조례로 결정)
 - 경정청구 시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도 경정청구일의 다음날에서 납부일의 다음날로 변경하여 납세자가 경정청구일보다 더 빠른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된 지방세환급가산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③ 지방세입 과세제도 합리화

- 주민 주도의 마을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 조례에 따라 읍면동별로 1만 5천원 내에서 주민세 세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 주민들이 납부한 세금만큼 스스로 사용처를 결정할 수 있게 되므로 마을공동체 기반의 진정



한 주민자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취득세 과세대상의 실질가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취득세 과세표준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는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사실상 취득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다만, 취득가격 관련 자료 시스템 구축, 변경된 취득세 과세표준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3년 시행할 예정이다.
- 무허가 주택, 불법적으로 사용 중인 공장의 부속 토지는 주택이나 경제활동 등에 활용된다는 이유로 재산세 부담이 감소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낮은 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다.
 - 의도적인 송달지연으로 인해 공매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차 공매통지서 송달 시에는 공유자 등 이해관계인에 대해 공매통지서 발신주의가 도입된다.
- 끝으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율 제고 등을 위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등 50여 개 법률에 있어 체납징수 시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을 준용토록 하여 관허사업 제한, 체납자 명단공개 등 간접강제 제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 직권 뿐만 아니라 신청에 의해서도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며, 체납처분 유예 사유도 화재, 감염병, 그 밖의 재해 등을 추가하여 적극적인 유예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오는 8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다시 한 번,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말까지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서민 생활 안정,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되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 지방세입 과세제도가 보다 더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

1.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코로나19 극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감면 연장 및 확대 •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복지·교육 분야 감면 연장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관련 감면 연장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신성장 기술 분야 감면 연장 • 항공업·운송업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감면 연장 •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 연장

2. 지방세 과세제도 합리화 및 공정사회 구현

지방세 과세제도 합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질가치 반영 강화를 위한 취득세 과표 개선 • 주민세(개인분) 읍면동별 세율 차등 근거규정 마련
공정사회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허가·불법적 이용 토지에 대한 과세 공정성 제고 • 공매통지서 송달에 대한 발신주의 도입 • 체납징수 강화를 위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적용 법률 확대

3. 지방세정 운영 효율화 및 납세자 권익 강화

지방세정 운영 효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저세 온라인 발매분에 대한 납세지 규정 신설 • 국세 환급통보 시 지방소득세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개선 • 체납징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결손처분 제도 개선
납세자 권익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송달·자동이체 방식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 경정청구 시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 합리화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처분 유예 사유 확대

● 이번 개정 법률안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코로나19 극복 지원

- (연장·확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감면 연장 및 확대
 -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예방·진료 지원을 위한 감면 연장 및 감염병 전문병원*에 대한 감면을 확대(취득세·재산세 10%p ↑)
 - * 감염병 연구·예방, 전문가 양성 등을 위해 복지부 장관(또는 질병청장)이 지정

구분		현행	개정
공공 보건 의료 기관	지방의료원 * 지자체 출자·출연	취득세 75% 재산세(5년) 75%	감면 연장(3년) * 감염병 전문병원 10%p ↑
	지방의료원 외 공공보건의료기관 (국립대병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등)	취득세 50% 재산세(5년) 50%	
	의료법인 등	취득세 30% 재산세(5년) 50%	

※ (감염병 전문병원) 코로나19 등 감염병 연구·예방, 교육 및 진료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점 고려, 현행 대비 10%p 높은 감면을 적용

- (연장)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복지·교육 분야 감면 연장
 - (복지) 장애인·국가유공자·한센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및 다자녀 가구의 양육 활동 지원을 위한 감면 연장

구분		현행	개정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100%	감면 연장(3년)
한센인	거주 지역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등 100%	
다자녀(3명) 가구	자동차	취득세 100% (6인승 이하 승용차 140만원限)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최소납부세제) 감면액이 취득세 200만원·재산세 50만원 이상인 경우 감면액의 15% 부과

- (교육) 코로나19 장기화 및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공공직업훈련시설 등 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연장

구분		현행	개정
학교	교육용 부동산 등	취득세·재산세 등 100%	감면 연장(3년)
	행복기숙사	취득세·재산세 등 100%	
	실습용 장비	취득세·재산세 100%	
평생교육시설(단체)	취득세 50%		
공공직업훈련시설		재산세(5년) 50%	
		취득세·재산세 50%	

● (연장)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관련 감면 연장

-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위하여 임대사업자, 생애최초 취득 주택, 서민주택 등 감면 연장

구분		현행	개정
임대 주택	40m ² 이하	취득세 100%	감면 연장(3년)
	40m ² ~60m ²	재산세 50~100%	
	60m ² ~85m ²	* 최소납부세제 적용	
생애최초 취득 주택	1.5억원 이하	취득세 100%	감면 연장(2년)
	1.5~3억원 (수도권 4억원)	재산세 50~75%	
서민주택 (40m ² , 1억원 이하)		* 최소납부세제 적용	감면 연장(3년)
		취득세 50%	
		취득세 100%	

2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연장) 친환경·신성장 기술 분야 감면 연장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전기·수소, 천연가스 등을 이용한 친환경 수송 및 교통수단의 감면 연장

구분		현행	개정
전기·수소	자동차	취득세 100% (140만원限)	감면 연장(3년)
	버스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100% (40만원限)	감면 연장(1년)
천연가스	연안항로	취득세 2%p ↓	감면 연장(3년)
	화물운송용 선박		

- (연장) 항공업·운송업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감면 연장
 -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산업 활성화 관련 감면 연장

구분		현행	개정
항공기		취득세 60% 재산세(5년) 50% * (재산세) 자산규모 5조원 이상 항공사 제외	감면 연장(3년)
버스, 택시		취득세 50%	
국제선박		취득세 2%p ↓, 재산세 50%	감면 확대(3년) (65만원限)
자동차	매매용 중고차	취득세·자동차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경형차	취득세 100% (50만원限)	

- (연장)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 연장
 -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적격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연장

구분		현행	개정
위기지역 내 사업전환 중소기업		취득세·재산세(5년) 50%	감면 연장(3년)
기업 구조조정	적격합병	취득세 50~60%	
	적격분할	취득세 75%	

3 지방세 과세제도 합리화

- 실질가치 반영 강화를 위한 취득세 과표 개선
 - (유상취득·원시취득) 과세표준을 신고가액에서 개인·법인 차별없이 “사실상 취득가격”(실제 거래가액) 으로 규정
 - (무상취득) 시가표준액에서 시장가치를 반영한 “시가인정액*”으로 규정
 - * 취득일로부터 6월이내 감정가액, 공매가액 및 유사매매사례가액 중 가장 최근 거래가액
 - 과표 개선과 병행하여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무상취득시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토록 기한 연장
- ⇒ 취득가격 관련 자료 시스템 구축, 변경된 취득세 과세표준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 '23년 시행 예정

현 행		개 정	
취득원인 구분 없이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MAX(신고가액, 시가표준액) ■ (법인) 사실상의 취득가격 ■ (개인·법인) 시가표준액 	유상·원시 취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법인) 사실상의 취득가격
		무상취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법인) 시가인정액

- 주민세(개인분) 읍면동별 세율 차등 근거 마련
 -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 조례에 따라 읍·면·동별 세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주도적인 마을자치 활성화

구분	현 행	개 정
주민세 개인분 세율	1만원 내 조례로 정하는 금액 < 신 설 >	<좌 동> 주민이 청구한 경우 1만5천원 내 읍·면·동별 세율 자율 결정

4 공정사회 구현

- 무허가불법적 이용 토지에 대한 과세 공정성 제고
 - 부적법한 토지 사용에도 보유세 부담 축소 및 위법행위 유인 소지 등 불합리 해소를 위해 무허가불법적 이용 토지에 대해 종합합산 과세

구분	현행	개정
무허가 주택 부속토지	주택 부속토지로 과세 (세율 0.1~0.4%)	종합합산 (세율 0.2~0.5%) ※ 종부세 과세
불법사용 공장 부속토지	분리과세 적용 (세율 0.2%)	

● 공매통지서 송달에 대한 발신주의 도입 ※ 국제 일치

- 의도적인 송달지연으로 인한 공매지연 방지를 위해 2차 공매통지서부터 공유자 등 이해관계인에 대해 공매통지서 발신주의 도입

구분		현행	개정
공매 통지	1차 공매공고	도달주의	〈좌 동〉
	2차 공매 공고	도달주의	발신주의

● 체납징수 강화를 위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준용 법률 확대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관련 법률(56개)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을 준용토록 함으로써 간접강제제도를 활용한 체납징수 강화
※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상 타법개정(부칙)을 통한 일괄개정 추진

구분	현행	개정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징수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준용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준용 * 과세정보 이용, 관허사업 제한, 체납자 명단공개 등 가능

5 지방세정 운영 효율화

● 레저세 온라인 발매분에 대한 납세지 규정 신설

- 온라인 발매분의 50%는 본장 소재지 자치단체로, 50%는 인구수 등에 따른 객관적 기준으로 안분하여 전국 자치단체로 귀속

구분	현행	개정
경륜 등 온라인 발매분 납세지	<신설> ※ 유권해석에 의해 본장에 귀속	본장 소재지(50%), 전국 지자체*(50%) 귀속 *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배분

● 국세 환급통보 시 지방소득세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개선

- 국세가 환급된 경우, 해당 환급 통보일*에 지방소득세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도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납세자의 환급청구권 보호
 - * 법인세·소득세 환급시 관련 내용 자치단체로 통보(지방세법 §103조의59 ①, ②)
 - ※ 과세권자의 부과제척기간 예외(제척기간 도과시에도 세무서장 경정통보 시 2개월 내 결정·경정 가능, 지방세기본법 §38②)를 인정한 점을 감안, 제도의 일관성 고려

구분	현행	개정
지방소득세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신설>	국세 환급 통보 시 지방소득세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다시 기산

● 체납징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결손처분 제도 개선

- 면책적 의미의 '결손처분' 용어를 '정리보류'로 변경하고,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결손처분'은 '결손'으로 처리
 - ※ 국세의 경우, '97.1.1일부터 결손처분의 납부의무 소멸효과 폐지로 '13년에 결손처분을 법에서 삭제하고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훈령)에 "정리보류" 규정 신설

구분	현행	개정
결손처분 제도	결손처분	정리보류 ※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시 결손 처리

6 납세자 권익 강화

● 전자송달·자동이체 방식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 납세자들의 편의 유인 제고를 위하여 세액공제 규모 확대

구분		현행	개정
① 전자송달·	1개 신청	150~500원 * 지자체별 조례로 결정	250~800원 * 지자체별 조례로 결정
② 자동이체 세액공제	2개 신청	300~1,000원 * 지자체별 조례로 결정	500~1,600원 * 지자체별 조례로 결정

- 경정청구 시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 합리화 ※ 국세 일치
 - 경정청구 시에도 직권환급과 동일하게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납부일의 다음날로 변경하여 납세자 권익 제고

구분		현행	개정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직권환급	납부일의 다음날	〈좌 동〉
	경정청구	경정청구일의 다음날	납부일의 다음날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처분 유예 사유 확대
 - 체납처분 유예 사유*에 화재, 감염병, 그 밖의 재해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를 추가하여 적극적 유예 근거 마련

구분	현행	개정
체납처분 유예 사유	압류 유예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가 가능한 경우	〈좌 동〉
	〈신 설〉	화재, 감염병, 재해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8월은 일용근로자·인적용역 사업자에 대한 소득자료 매월 제출 첫 달!

- 국세청, 2021. 8

- 8월, 135만 명에게 안내문 발송
 -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발맞춰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매월 제출로 단축되었습니다.
 - '21년 7월에 일용근로소득이나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8. 31. (화)까지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 ①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②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 이에 따라 국세청은 8. 9.(월)부터 개인, 영리·비영리법인, 국가기관 등 135만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비대면 신고서비스 강화
 - 신고편의 향상 및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로 쉽고 안전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사업자의 제출부담 최소화를 위해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제출편의성을 최대한 높였습니다.
 - * 세법이 낯선 사업자도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누구나 쉽게 이용 가능

- 맞춤형 성실신고 지원
 - 원천징수의무자가 전자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제출방법 따라하기 동영상」을 제공합니다.
 - 어렵고 딱딱한 안내문을 쉬운 용어로 바꾸고, 안내문에 신고 시 실수하기 쉬운 사항을 시각화·도식화*하여 반영했습니다.
 - * 일용근로자와 인적용역사업자 구분방법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제공

- 신고 시 알아두면 좋은 사항
 - 소득자료는 고용보험 가입누락 확인 등 복지행정 지원의 근거로 활용되는 만큼 소득자료의 정확성·신뢰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분들은 소득유형을 올바르게 분류하고, 사업내용에 부합하는 업종코드를 기재할 수 있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일용근로소득과 인적용역 사업소득 구분, 신설 업종코드 적용 등

□ 신고 후 사후관리

- 일용근로자나 인적용역 사업자는 홈택스·손택스의 본인소득확인 기능을 이용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일용·간이지급명세서상 본인의 소득을 실시간으로 확인(self-check) 가능합니다.

- 만약 지급명세서가 사실과 다르게 제출되었거나 미제출된 경우, 국세청 누리집에서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민소통 → 국세청 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 한편, 지속적·반복적으로 잘못 신고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하여 소득자료의 정확성을 높일 예정이오니, 성실하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8월, 소득자료 매월 제출 첫 달

- '21년 7월에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였거나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8. 31.(화)까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보험설계, 방문판매 등 인적용역의 제공으로 인해 발생한 사업소득

- 이번 안내문은 135만 명에게 8. 9.(월)부터 발송했으며, 그 중 법인은 53만 명, 개인은 82만 명입니다.
- 특히, 일용근로자나 인적용역 사업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국가기관, 비영리법인 등도 제출의 무자에 포함되니,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8월 신고안내는 납세자가 여러 장의 안내문을 받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통합안내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 아울러 국가기관에는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니, 국가기관에서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공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 유형1(일반사업자)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 안내를 1장으로 통합
· 유형2(국가기관)	· 범정부적 복지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기관은 별도 유형으로 발송

2 소득자료 제출은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세무서 방문 없이 가급적 전자신고를 통해 소득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세법이 낮은 사업자도 신고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을 제공하니,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유형		접근경로
전자 신고	PC	홈택스 → 「복지이음」 → 인건비 간편제출
	모바일	손택스 → 신청/제출 → 「복지이음」 → 인건비 간편제출

- 다만, 영세사업자·신규사업자가 세무서를 방문했을 경우 국세신고안내센터*를 활용해 제출방법 안내 등 현장 신고지원(도움창구)을 할 예정입니다.
- * 센터 미설치 관서는 각 소득세과·부가가치세과 상담창구에서 신고지원
- 한편, 전자신고 이용편의 개선 및 시스템 유지보수 기간을 고려해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는 제출하는 달의 6일부터 말일까지 가능하니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이는 전산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및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이니,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맞춤형 도움자료 제공

① 쉽고, 빠른 전자신고를 이용하세요

- 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사업자도 전자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제출방법 따라하기 동영상*」



을 제작하여 지원합니다.

- * ① 국세청 홈택스 → 복지이음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② 국세청 홈택스 → 복지이음 → 간이지급명세서
- ③ 국세청 홈택스 → 복지이음 → 인건비 간편제출

②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개선하였습니다

- 납세서비스 재설계 차원에서 안내문에 일용근로자·인적용역사업자 구분 체크리스트 등 성실 신고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 또한, 세법이 낮은 수요자 입장에서 안내문을 개선하여, 어렵고 딱딱한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었습니다.
- * “누가 무엇을 제출하나요?” 같이 읽기 편한 서술형 표현 사용

4 소득자료 신고 시 알아두면 좋은 사항

◆ 잘못된 소득자료 제출로 인해 가산세 등 세무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미리 챙기면 좋을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신고 시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① 소득유형 및 소득자 업종분류가 중요합니다

- 실질적·제도적 사각지대 없는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지원의 전제조건은 소득자료의 정확성·신뢰성 확보입니다.
- 이에 원천징수의무자는 일용근로소득과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명확히 구분하여 소득유형에 맞는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식당주방보조원, 건설업종사자 등을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여 지급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기재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 또한, 소득자의 소득유형이 사업소득이라면, 사업내용에 부합하는 정확한 업종코드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 고용보험 적용대상 인적용역 사업자*임에도 다른 업종으로 제출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가입누락 확인을 하기 어려워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 '21년 7월 이후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8종): 보험설계사, 학습지방문강사, 교육교구방문강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방과후강사
- 예를 들어 화장품을 방문·판매하는 방문판매원(940908)을 기타자영업(940909)으로 잘못

분류하면, 해당 소득자가 고용보험 혜택에서 누락될 수 있습니다.

② 신설 업종코드를 정확히 적용하셔야 합니다

-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정책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 적용대상 노무제공자 유형과 세법상 인적용역 사업자 유형이 일치되도록 '21년 7월부터 업종코드를 분리·신설하였습니다.

인적용역 사업자	방문판매원 (940908)	분리·신설 →	방문판매원(940908)
			학습지방문강사(940920)
	채권회수수당 기타모집수당 (940911)	분리·신설 →	교육교구방문강사(940921)
			대여제품방문점점원(940922)
신설		채권회수수당·기타모집수당(940911)	
		대출모집인(940923)	
		신용카드회원모집인(940924)	
		방과후강사(940925)	

- 원천징수의무자는 인적용역 사업자의 업종이 학습지방문강사 등에 해당할 경우 분리·신설된 업종코드로 분류하여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종전에는 학습지 회원의 가정을 방문하여 학습지도를 하는 인적용역 사업자를 방문판매원(940908) 코드로 기재하였다면, 7월 소득지급분부터는 학습지방문강사(940920) 코드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분리·신설된 업종에 해당하는 인적용역 사업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추정되는 약 3천 명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사전도움자료 형식의 별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③ 소규모 사업자도 미리 준비하세요

- 소규모 사업자*는 제도적응시간을 감안해 종전 제출기한**까지 소득자료 제출 시 향후 1년간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 *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
 - ** 일용지급명세서: 매 분기 다음 달 말일, 간이지급명세서: 매 반기 다음 달 말일
 - 다만, '22년 7월 소득지급분부터는 매달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대상이므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1년 7월~'22년 6월 소득지급분까지 종전 제출기한까지 제출 시 가산세 면제	⇒	'22년 7월 소득지급분부터 미제출 등 불성실 제출 시 가산세 대상
--	---	--

4 휴·폐업자도 소득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폐업을 했을 경우에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휴업일·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대출모집인에게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가 '21년 7월 중 폐업하였다면,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인 8월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한편, 부가가치세 과세업종을 영위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을 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하므로,
 - 확정신고를 할 때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소득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세무서를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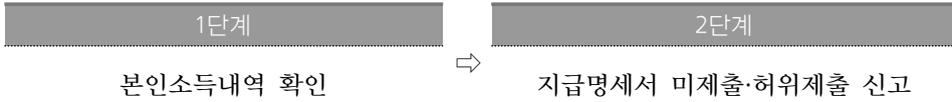
5 일용지급명세서 제출 시 「과세소득」 작성에 유의하세요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과세소득」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월급여의 합계액을 의미하므로, 「과세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액(15만 원)을 차감하여 작성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 또한, 「비과세소득」은 근로소득공제액과는 다른 개념으로 생산직 일용근로자가 야간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등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5 소득자료 성실제출 유도를 위한 촘촘한 사후관리

1 소득자도 지급명세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득자료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소득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소득자 신고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 홈택스·손택스의 '본인소득내역확인' 기능을 통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료를 제출한 후 1시간 이내에 실시간으로 소득자료 제출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상호검증(cross-check)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 만약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소득자가 직접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신고대상: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구 분	접 근 경 로
본인소득내역확인	① 홈택스 → 복지이음 → 본인소득내역확인 ② 손택스 → 신청/제출 → 복지이음 → 본인소득내역확인
지급명세서 신고센터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민소통 → 국세청 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 소득자료 불성실 제출이 확인될 경우 불성실 제출자는 가산세 부과, 필요경비 부인 등으로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성실신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제출자료의 정확성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 제출된 소득자료는 전국민 고용보험 등 복지행정 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핵심데이터이므로
 - 신고 전에는 성실신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홍보, 신고안내, 도움정보 제공 등을 최대한 확대하는 한편,
 - 신고 후에는 소득유형 점검, 업종코드 오분류 분석 등 소득자료 분석·관리를 통해 제출자료의 정확성·신뢰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 분석결과를 토대로 개별안내 대상자를 선정하여 오류유형별 안내문을 발송함으로써 사업자 스스로 소득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하도록 자기시정 기회를 제공하되,
 - 사업자가 소득자료를 반복적으로 잘못 제출한 경우에는 세법상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 한편, 공익법인이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비영리법인, 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사후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 손실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에도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대



상임

6 소득자료 성실제출은 복지행정 지원의 초석

- 소득자료는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등 탄탄한 고용·사회안전망 구축의 마중물 역할을 하오니, 사업자들은 성실히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실시간 소득과약 제도는 새롭게 추진되는 업무인 만큼 국세청은 집행과정에서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한편,
 - 사업자 부담 등 어려움을 조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민이 편안,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붙임 1 -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 개요

① 개념

- 소득자료 제출이 매월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자의 소득자료 관리·제출부담이 증가할 것을 대비해 사업자의 종사 직원 및 급여 내역 등은 물론 일용·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손쉽게 생성·제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

② 주요기능

- (사원 관리) 최초 1회 사원정보*를 등록하면 매월 급여 입력 시 소득자 인적사항을 별도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 등록
 - * 소득자 유형(일용근로자/인적용역자), 내·외국인 구분, 주민등록번호, 성명, 전화번호
- (급여 관리) 근무일자·지급액 등만 입력하면 일용·간이지급명세서 자동 생성·제출
 - ① (일용근로자) 근무일자, 과세소득, 비과세소득을 입력하면 원천징수세액을 자동으로 계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생성
 - ② (인적용역자) 업종코드, 지급액을 입력하면 해당 업종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세액을 자동으로 계산,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생성
- (현황 조회) 제출한 지급명세서 및 소득자별 급여 현황 등 조회

붙임 2 - 납세자 맞춤형 통합플랫폼 「복지이음」 포털

① 「복지이음」 의미 및 특징

- (의미) 복지이음(복지"e"음)은 소득(incom"e")과 고용("e"mployment)를 효과적으로 연계해 고용안전망 구축에 기여한다는 의미
- (특징) 복지행정 서비스를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산재되어 있던 복지 관련 메뉴를 모아 '원스탑(one-stop)' 서비스 제공

② 주요 메뉴

- 인건비 간편제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근로·자녀장려금, 취업 후 학자금 상황

③ 접근경로

- (PC) 홈택스 메인화면 → 「복지이음」
- (모바일) 손택스 메인화면 → 신청/제출 → 「복지이음」

붙임 3 -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제도

①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 소득자는 홈택스의 「본인 소득내역 확인(일용·간이)」 메뉴*에서 사업자가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본인 소득을 확인하고, 지급명세서가 미제출되었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된 경우에는 직접 해당 사실 신고**

* 홈택스 → 복지이음 바로가기 → 본인 소득내역 확인(일용·간이)

** 국세청 홈페이지 → 국민소통 →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② 신고대상

-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 또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고,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 사업자가 ① 식당주방보조원, 시간제 편의점근무자 등을 일용근로자로 고용하고 지급한 소득을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잘못 제출한 경우나 ② 인적용역 사업 업종코드를 잘못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도 대상

③ 처리절차

-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대상자(피신고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 처리

붙임 4 - 지급명세서 가산세 개정내용('21.7월 이후 지급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구 분		가산세		
		소규모 사업자		그 외 사업자
		'21.7월~'22.6월 지급분	'22.7월 이후 지급분	
미제출	종전 제출기한 내 제출	가산세 면제	지급금액×0.25% (1개월 이내 제출 : 0.125%)	
	종전 제출기한 경과하여 제출	지급금액×0.25%		
불분명 * 또는 허위제출	$\frac{\text{불분명(허위)금액}}{\text{총지급액}} \leq 5\%$	가산세 면제		
	$\frac{\text{불분명(허위)금액}}{\text{총지급액}} > 5\%$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0.25%		

* 불분명한 경우란? 제출된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성명, 납세번호·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같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붙임 5 - 소득자료 제출 개요

①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가. 제출의무자

-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소득세법 §164)
- ※ (일용근로자)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은 자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소득세법 §14③, 동법 시행령 §20①)

나. 제출기한

- 일용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 ※ 7월 소득지급분 → 8월 말일까지 제출, 8월 소득지급분 → 9월 말일까지 제출 → 그 이후 동일한 주기로 매월 제출
- 단, 12월 31일까지 해당 귀속년도분의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12월 말일을

지급일로 보아 다음해 1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함

- 한편,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다. 미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

- 미제출 등에 대해서는 세법상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가산세 부과
- 미제출·불분명 제출 등 가산세 0.25%, 지연제출 시 가산세 0.125%
 - 미제출은 법정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불분명 제출은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성명, 납세번호·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지급액 등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의미
 - 지연제출은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한 경우 의미

②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가. 제출의무자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사업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소법 §164조의3).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 및 의료보건용역을 통해 얻는 소득(소득세법§127①, 동법 시행령 §184①)을 의미하며, 면세되는 인적용역이란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용역을 지칭

나. 제출기한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 ※ 7월 소득지급분 → 8월 말일까지 제출, 8월 소득지급분 → 9월 말일까지 제출 → 그 이후 동일한 주기로 매월 제출
- 한편,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다. 미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

- 미제출 등에 대해서는 세법상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가산세 부과
- 미제출·불분명 제출 등 가산세 0.25%, 지연제출 시 가산세 0.125%
 - 미제출은 법정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불분명 제출은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성명, 납세번호·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지급액 등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의미
 - 지연제출은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한 경우 의미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시기 조정 등을 위한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 2021. 7

〈 개정안 주요 내용 〉

- ① 코로나19로 인한 대다수 기업들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시기를 1년 연기합니다.
- ②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인의 품질관리수준 자체평가 근거 마련,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 검토 등 회계감독 관련 법령을 정비합니다.

1 개정 배경

-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출장 제한 등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 기업이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갖추고 지켜야 하는 내부통제 시스템 일체
- 이를 감안하여,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시기를 조정하고, 기타 회계감독 관련 법령 정비 등을 위해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2 주요 내용

- ①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시기 연기(안 부칙 제3조)
 - (현행)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22년부터 연결기준*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하고 외부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 * 개별기업 기준이 아닌 종속회사 전체를 아우르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회사 전체를 의미
 - 〈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관련 감사 시행시기 〉
 - ① (별도 기준) 자산 2조원 이상('19년), 5천억원 이상('20년), 1천억원 이상('22년), 기타('23년)
 - ② (연결 기준) 자산 2조원 이상('22년), 5천억원 이상('23년), 기타('24년)
 -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경우, 해외 계열사가 많은 편인데(평균 28개) 코로나19로 인

한 해외출장 제한 등으로 당초 기한 내에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 * 163사 중 해외종속회사가 있는 회사는 152사로 해외종속회사 총 수는 4,338사
- (개선)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소요시간,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시행시기를 1년 연기*합니다.
- * 자산 2조원 이상('22년→'23년), 5천억원 이상('23년→'24년), 기타('24년→'25년)
- 다만, 조기 적용을 원하는 회사는 당초 정했던 시행시기*에 맞추어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 자산 2조원 이상('22년), 5천억원 이상('23년), 기타('24년)

② 감사인의 품질관리수준 자체평가 근거 마련 등(안 제29조)

- (현행)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감사인의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을 통해 감사인이 품질관리수준을 자체평가하기로 하였으나 관련 근거 및 절차 등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 (개선) 감사인의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자체평가 실시 근거 및 관련 절차 등이 구체화됩니다.
- 감사인이 품질관리수준에 대해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수준 자체평가기준*이 마련됩니다.
- * 예시) 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품질관리 전담인력 비중, 사전 및 사후심리시간,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감사인 감리결과, 품질관리수준 개선 정도 등으로 구성
- 감사인은 매 사업연도별 품질관리수준을 자체평가하고, 그 결과를 일정기한 내(예시: 사업연도 종료후 4월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감독 강화 차원에서 감사인의 품질관리수준 자체평가 결과를 감사인 감리대상 선정에 반영하는 등 감독업무에 적극 활용(세부내용은 별첨 참조)

③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 감독 내실화(안 제11조 등)

- (현행) 외부감사법 개정에 따라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관련 등록요건* 유지의무가 도입('20년 시행)되었으나, 유지요건 위반시 감리 및 제재양정 등 감독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 * 등록회계사 40인 이상, 감사품질 확보를 위해 통합관리체계구축 등
- 현재 등록요건 유지 관련 감리는 등록요건 위반 제보가 접수되거나 증권선물위원회가 감리를 요구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 또한, 등록요건 유지 위반시 위반사항의 경중과 관계없이 상장사 감사인 등록 취소만 가능하게 되어 있어 위반정도에 비례한 제재부과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개선) 등록요건 유지 의무에 대한 상시적 감리 근거를 신설하고, 유지 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상장사 등록 감사인은 등록 요건의 준수 여부를 매 사업연도마다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금



윤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등록요건 유지 의무 위반시에는 위반행위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감사인에 대해 지정제외점수가 부과*됩니다.

* 지정제외 점수를 받은 감사인은 해당 점수에 따라 감사인 지정시 일정 개수의 회사를 지정받지 못함(30점당 기업 1개)

4 기타 사항

- 투명성 보고서* 홈페이지 게시의무는 상장사 감사인으로 한정하고 일반 회계법인은 면제합니다. (안 제28조)

* 지배구조, 이사의 보수, 품질관리업무 담당 인력, 소속 공인회계사 경력 현황 등을 기재한 문서

- 투명성 보고서 기재내용이 사업보고서와 동일하고, 이해관계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상장사 미등록 회계법인의 경우, 투명성 보고서 활용도가 낮은 점을 감안하였습니다.

3 향후 계획

-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1년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참고 - 외부감사인의 감사품질관리 자체평가제도 주요 내용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 중)

- 외부감사인의 대표는 매년 감사품질관리 수준을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감독기관에 제출

* 금융감독원·공인회계사회는 자체평가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

- 공인회계사회가 정한 「품질관리기준」을 중심으로 금융감독원이 자체평가 기준을 마련
- 상장사 외부감사인 등록요건* 유지여부에 대한 자체평가도 병행
- * '20년부터 상장사 외부감사 업무를 하고자 하는 회계법인은 일정 요건(외부감사법상 등록된 회계사 40인 이상,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을 갖추어 금융위에 등록

〈 자체평가기준 예시 〉

- 감사업무 수임 전 회계법인의 적격성·역량 등에 대한 확인 등(품질관리기준 26)
- 감사조서 관리의 적정성(품질관리기준 45)
- 감사보고서 발행 후 점검의 충실성 등(품질관리기준 48)

- 외부감사인의 자체평가 결과를 감독업무에 적극 활용

- 외부감사인 감리를 저인망식이 아닌 자체평가 결과 등이 반영된 중점감리항목*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전환 → 감리의 효율성 제고

- * 자체평가 결과, 회계법인의 투명성보고서 등 공시내용, 상장사 외부감사인 등록요건 심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독기관이 매년 선정
- 자체평가 결과를 품질관리감리 대상 선정에 반영
 - * 직전년도에 감리를 받은 외부감사인도 감리 가능

〈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 주요 내용 〉

- (추진 배경) 기업의 회계처리 역량 및 외부감사의 품질 제고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을 마련
- (주요 내용)
 - ① 재무제표 심사* 중심의 감독시스템 구축
 - * 기업의 최근 공시된 재무제표 모니터링하여 오류가 있는 경우 신속한 정정을 유도하고 재무제표 심사결과 중대한 회계부정이 있는 경우 감리 착수
 - ② 기업의 회계처리역량 지원 강화를 위한 이용자 중심의 질의회신체계 구축
 - ③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외부감사인의 감사품질관리 자체평가제도 도입

고용노동부, 2022년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으로 고시

- 고용노동부, 2021. 7

- 고용노동부는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인상률 5.05%, 증 440원)으로 8월 5일(목) 고시하였다.
 -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914,440원이며,
 -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 간담회(7회), 현장방문(4회) 및 9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서 심의·의결하였고,
 - △ (월 환산액 병기) 6.22. '시간급, 월환산액 병기' 의결(만장일치)
 - △ (업종별 구분) 6.29. 찬성 11표, 반대 15표, 기권 1표로 부결(단일 최저임금 적용)
 - △ (최저임금 수준) 7.12. 찬성 13표, 반대 0표, 기권 10표로 '시간급 9,160원' 가결

 - 고용노동부는 7.19.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7.29.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하였으며,
 - * (최저임금법 제9조제2항)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이 기간 동안 노동계의 이의 제기는 없었고, 경영계(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3건의 이의 제기를 하였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수용하였다.
-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제회복 기대와 코로나19 영향 지속 등 복합적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선을 다해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점을 존중한다” 라고 하면서,
 - 앞으로 ”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갈등을 넘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포용적 회복 계기가 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8월 6일 (금)	8월 9일 (월)	8월 10일 (화)	8월 11일 (수)	8월 12일 (목)
미 달 러 (USD)	1143.50	1142.30	1145.00	1148.50	1155.00
일 본 엔 (JPY)	1041.68	1035.96	1037.84	1038.76	1045.96
영 국 파 운 드 (GBP)	1592.95	1583.46	1585.31	1589.24	1601.64
캐 나 다 달 러 (CAD)	914.98	908.28	910.68	917.59	923.59
홍 콩 달 러 (HKD)	147.05	146.82	147.11	147.59	148.47
위 안 화 (CNH)	176.85	176.76	176.78	177.15	178.03
유 로 화 (EUR)	1353.22	1341.92	1343.71	1346.04	1355.97
호 주 달 러 (AUD)	846.76	837.82	839.29	843.92	851.75
싱 가 폴 달 러 (SGD)	846.47	842.68	843.43	844.61	851.24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271.13	270.75	270.78	271.61	272.41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세청, 2021. 7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와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7월 29일 입법예고하고, 9월 7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 이번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개정(‘21.10.14.시행,’ 21.11.19.시행)에 따라 신설되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제재,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임신 근로자 업무시각 변경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 ▲ 직장 내 괴롭힘 제재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
 - ▲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 ▲ 임신 근로자 업무시각 변경의 허용예외 사유 및 신청방법·절차,
 - ▲ 직장 내 괴롭힘 등 과태료 신설에 따른 세부 부과기준,
 - ▲ 이행강제금 위반행위별 부과 상한액 관련 규정이다.
 - 또한, 그간 제도운영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했던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을 추가 정비했다.
 - ▲ 기숙사 1실당 거주인원 축소,
 - ▲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에 유산사산휴가 기간 추가,
 - ▲ 임금채불 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 정비,
 - ▲ 단시간 근로자 근로조건 결정기준 정비,
 - ▲ 임금대장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

-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 제재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시행: ‘21.10.14.)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 사용자에게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 이때 사용자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도 사용자에게 준하는 제재 대상으로 포함했다.
 -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를 ①사용자의 배우자, ②4촌 이내의 혈족, ③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 이는 최근 혈연관계 친밀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고려했다.
 - *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 [참고: 친족의 범위]

<p>■ 혈족: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등 혈연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조부모, ▲ 자식, 손자녀, ▲ 형제자매, ▲ 부모의 형제자매 등 <p>■ 인척: 혼인에 의하여 관련된 사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의 부모, ▲ 배우자의 형제자매, ▲ 형제자매의 배우자, ▲ 부모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 자식의 배우자 등

<2>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신설(시행: '21.11.19.)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 임금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은 법에서 위임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필수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인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다.
 - ▲ 성명 ▲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 임금지급일 ▲ 근로일수 ▲ 임금 총액 ▲ 총 근로시간수
 - ▲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 ▲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 ▲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 한편,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고,
 -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 [참고: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식재(植栽)·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포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참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법 제6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3> 임신 근로자 업무시각 변경 허용 예외사유 등(시행: '21.11.19.)

- 11월 19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임신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을 신청할 경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 다만,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와 업무시각 변경의 신청방법 및 절차를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업무시각 변경 신청의 허용 예외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임신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규정했으며,
 - 업무시각 변경을 하려는 근로자는 업무시각 변경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임신기간, 업무시각 변경의 개시 및 종료 예정일,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신청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다.

<4> 과태료 부과기준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임금명세서 교부(법 제48조제2항), 직장 내 괴롭힘(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임신 근로자 업무시각 변경 허용(법 제74조제9항) 관련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제116조제2항)됐고,
 - 이에 따라 위반횟수 및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1)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사.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116조 제2항제2호			
1)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30	50	100
2) 임금명세서에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20	30	50

2)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하거나, 사용자 조치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카.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가 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법 제116조 제1항			
1) 사용자가 한 사람에게 수차례 직장 내 괴롭힘을 하거나 2명 이상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500	1000	1000
2)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200	500	1000
3) 사용자가 그 밖의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300	1000	1000
타. 법 제76조의3제2항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6조 제2항제2호	300	500	500
파. 법 제76조의3제4항에 따른 근무장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6조 제2항제2호	200	300	500
하. 법 제76조의3제5항에 따른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6조 제2항제2호	200	300	500
거. 법 제76조의3제7항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법 제116조 제2항제2호	300	500	500

3) 임신 근로자의 업무시간 변경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카. 법 제74조제9항에 따른 임신 근로자의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 신청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6조 제2항제2호	500	500	500

<5>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시행: '21.11.19.)

- 11월 19일부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한도가 기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됐다.
- 따라서 이행강제금 위반행위별 부과 상한액도 이행강제금 상한 인상을(50%)과 동일하게 인상했다.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금액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자	법 제33조 제1항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정당한 이유 없는 휴직, 정직(停職)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자	법 제33조 제1항	25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轉職), 감봉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자	법 제33조 제1항	200만원 이상 750만원 이하
정당한 이유 없는 그 밖의 징벌(懲罰)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자	법 제33조 제1항	100만원 이상 750만원 이하

<6> 기숙사 1실당 거주인원 축소(시행: '21.10.14.)

- 최근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외국인고용사업장 기숙사에 기거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코로나 19에 감염되는 등 숙소 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와 기숙사 운영 상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숙사 1실당 거주인원을 기존 15명에서 8명으로 축소한다.
 - * 1실당 거주인원이 2인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84.6%)이며, 7명 이상 이상인 경우가 0.9%, 15명 이상인 경우는 0.05%임

- 최현석 근로기준정책관은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사용자에게 과태료 처분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시행되므로, 하위법령 정비 및 사업장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노무관리 지도 등 제도 안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라며,
- 그밖에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 라고 밝혔다.
-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